(하도급)공정거래 협약서

(2016, 12, 23)

(주)원익아이피에스(이하 "원익아이피에스"라 한다)는 협력사 (주)뉴파워 프라즈마(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원익아이피에스와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원익아이피에스와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 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 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4대 실천사항 준수) 원익아이피에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 를 거쳐 합의
-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 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준수한다.
- 1.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 2.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 2. 58억원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제4조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원익아이피에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 급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①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물 량·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미리 알리는 시스템



-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③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 ㅇ 대금 지급일수 단축
 - 현재 마감후 15일 이내 지급 중이며, 현행 유지
 - ㅇ 현금 결제비율 개선
 - 현재 100% 현금 결제 중이며, 현행 유지
 - ㅇ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 현재 100% 현금성 결제 중이며, 현행 유지
- ⑤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형평성 추구
- 원익아이피에스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형평성 있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 ⑥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 마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정을 위한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제5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원익아이피에스는 하도급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②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ㅇ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 및 시정
- ③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제6조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원익아이피에스와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 ③ 원익아이피에스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 ④ 원익아이피에스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협조
- ⑤ 기타

제7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원익아이피에스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기준 준수) 원익아이피에스와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원익아이피에스는 협약체결 후 20일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원익아이피에스는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2016년 12월 23일

(중견기업)

(협력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식회사 뉴파워포리즈마

대표이사 변정우 (연)

대표이사 위순임(인)



